

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를 위한 사업주 지원제도 안내

□ 장기간의 산재치료 중 고용한 대체인력의 인건비 부담이 최대 360만원 줄어 듭니다.

- 지원대상 : 산재발생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의 사업주
- 지원조건 : 산재치료기간 중에 신규로 채용한 대체근로자를 30일 이상 고용하고, 장애가 남거나 5개월 이상 요양한 해당 산재근로자를 요양종결 후 원직장에 실제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
- 지원금액 : 임금의 50%(월 60만원 이내)
- 지원기간 : 산재치료기간(최소 1개월 ~ 최대 6개월)

□ 산재장애인을 치료종결 후 계속 고용하면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- 지원대상 : 제1급 ~ 제12급의 산재장애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계속 고용하고 한 사업주
- 지원조건 : 요양종결일(또는 직업복귀일)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
- 지원금액 및 기간 : 고시금액 범위내에서 최대 12개월 이내 지원

제1급 ~ 제3급	제4급 ~ 제9급	제10급 ~ 제12급
월 60만원(최대 720만원)	월 45만원(최대 540만원)	월 30만원(최대 360만원)

□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애인을 위한 훈련 및 운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- 지원대상 : 원직장에 복귀한 제1급 ~ 제12급의 산재장애인에게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
 - 직장적응훈련 : 외부 직업훈련기관 또는 자체시설을 활용한 직업훈련(자격증과정, 특수처운전 등)
 - 재활운동 : 외부 스포츠시설 또는 자체시설을 활용한 재활운동(헬스, 수영 등)
- 지원조건 :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종료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
- 지원금액 : 직장적응훈련 월 45만원 이내, 재활운동비 월 15만원 이내
- 지원기간 : 최대 3개월 이내 지원

☞ 청구방법 : 산재장애인의 고용을 유지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속 기관으로 청구서류 제출
* 청구서류 : 청구서, 근로계약서, 임금대장, 영수증, 통장사본 등

☞ “고용보험법”, “장애인가용촉진 및 직업재활법” 등 타 법령에 의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그 밖의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

□ 산재근로자의 직무수행가능 정도에 대한 평가를 무료로 받아보실수 있습니다.

- 지원대상 : 산재로 직무능력이 저하된 직장복귀를 희망하는 산재근로자 또는 사업주
 - 작업능력평가 : 산재근로자의 직무수행가능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, 직무조정 등 안정적인 직장복귀를 위한 참고자료 제공
 -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 : 작업능력평가 결과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산재근로자에게 치료기간 중에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2~12주간의 1:1 전문 재활프로그램 제공
- 운영병원 : 근로복지공단 인천·안산·대구·창원·순천·대전병원 재활전문센터

❖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(www.kcomwel.or.kr ☎ 1588-0075) 지역본부(지사)로 문의하시면 정성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